

#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홍성룡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394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4월 1일

발 의 자 : 홍성룡, 김화숙, 한기영, 강동길,  
김기대, 김정태, 김제리, 김춘례,  
박순규, 양민규, 유 용, 이광호,  
이동현, 장상기, 황인구 의원  
(15명)

## 1. 제안이유

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·발전시키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·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·추진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나.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·민간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,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가보훈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해당없음

##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, 가치의 계승·발전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“항일독립운동”이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일제의 민족차별 및 국권침탈 등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.

**제3조(책무)**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·발전을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,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)**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·발전을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추진방법
3. 자원 조달방안
4. 유관기관과의 협력

5.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5조(기념사업)**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·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항일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, 학술, 문화사업
2. 항일독립운동 희생자 추모사업
3.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**제6조(위원회의 설치·구성)**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구성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.

1.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
2. 제6조에 따른 기념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7조(사업의 위탁)**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·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공기관·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8조(협력체계 구축)**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을

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, 타 지방자치단체,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**제9조(표창)**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을 통해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, 개인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**제10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○ 항일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, 학술, 문화사업 비용 ≙ 600,000천원

- 산출방식  $\sum_{i=1}^5$ (연간 항일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, 학술, 문화사업 비용)<sub>i</sub>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1~2025)

- 연간 항일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, 학술, 문화사업 비용  
= 지원단가 × 1식  
= 120,000천원

※ 참고) 2019년 서울시 3.1운동 및 임시정부 심포지엄-전시회 예산이 240,000천원이었으나 100주년이 아닌 평년도 예산은 절반수준으로 가정

○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위원회 운영비용 ≙ 49,500천원

- 산출방식  $\sum_{i=1}^5$ (연간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위원회 운영비용)<sub>i</sub>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1~2025)

- 연간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위원회 운영비용  
=(참석수당×수당지급 참석인원×개최건수)+(업무추진경비×참석인원×개최건수)  
=(150,000원×9명×6회)+(30,000원×10명×6회)  
=9,900천원  
=120,000천원

※ 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고 수당을 받는 위원은 9명이며, 연간 총 6회 개최(2시간 이상)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

붙임) 항일독립운동 희생자 추모사업(안 제5조(기념사업)제2호 관련) : 기 추진

: 2020년 서울시 보훈단체 지원 예산(3,561,100천원) 중 3.1절 및 광복절 기념행사(100,000천원)와 봉오동전투 100주년 기념사업, C-47기 전시 및 교육, 13도 창의군탑 정비 및 기념사업 지원예산 등 편성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당관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주무관 채소영

☎ 02-2180-7942

e-mail : liz1998@seoul.go.kr